

2022년도

KTA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22. 2. 5. (토) 13:30

대전 유성호텔 별관 3층 킹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 유성호텔)

2022년도 KTA 정기대의원총회 식순

1. 개식통보
2. 성원보고
3. 국민의례
4. 회장인사
5. 안건심의

가. 보고안건

- 1) 전차회의록 낭독
- 2) 2021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 3)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
- 4) 제28대 임원 변경 보고의 건
- 5) 2021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6) 2022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DAVIS CUP) 서울 개최 보고의 건
- 7) 사무처 주요 업무 보고의 건
 - 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혁신 평가 결과
 - 사무처 직원 사직의 건
 - 사무처 직원 현황 보고의 건
- 8) 대한테니스협회 후원 계약 체결 예정 보고의 건
- 9) 전문체육 중계방송(에스티엔) 채무 종결 완료 보고의 건
- 10) 생활체육 중계방송(포토클럽-임재섭) 채무 종결 완료 보고의 건
- 11) 각종 소송 보고의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소송 보고의 건
 - 아머스포츠코리아 약정금 청구 소송 보고의 건

- 27대 소송 관련 비용
 - 28대 소송 관련 비용
 - 소송 외 관련 비용
- 12) 한국중고테니스연맹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13) 한국여자테니스연맹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14) 공인검정사업 결과 보고의 건

나. 심의안건

- 1)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심의의 건
- 2) 정관 개정 심의의 건
- 3) 제28대 임원 임용규, 한나래 이사 승인의 건
- 4)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다. 기타사항

6. 폐식통보

회의안건 목차

가. 보고 안건1-24

- 1) 전차회의록 보고의 건 1
- 2) 2021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2
- 3)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 3
- 4) 제28대 임원 변경 보고의 건 6
- 5) 2021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7
- 6) 2022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서울 개최 보고의 건 8
- 7) 사무처 주요 업무 보고의 건 9
- 8) 대한테니스협회 후원 계약 체결 예정 보고의 건 11
- 9) 전문체육 중계방송 채무 종결 완료 보고의 건 12
- 10) 생활체육 중계방송 채무 종결 완료 보고의 건 13
- 11) 각종 소송 보고의 건 14
- 12) 한국중고테니스연맹 감사 결과 보고의 건 18
- 13) 한국여자테니스연맹 감사 결과 보고의 건 21
- 14) 공인검정사업 결과 보고의 건 22

회의안건 목차

나. 심의 안건25-33

- 1)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의 건 25
- 2) 정관 개정 심의의 건 27
- 3) 제28대 임원 임용규, 한나래 이사 승인의 건 32
- 4)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33

다. 기타 사항34

가. 보고 안건

1 전차회의록 보고

□ 지난 2021년 1월 30일(토) 14시 서울 올림픽공원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23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 보고안건은 3건으로 전차회의록 보고, 2020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을 진행하였고,

□ 심의안건은 5건으로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의 건, 정관 개정 심의의 건, 임원 구성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 기타 사항에서 추가 상정된 안건으로는 부산 이종윤 대의원이 2021년도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대의원으로 승인 의결되었으며 임원 추가 증원의 건은 3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혁신위원회 위원 소개 및 자유로운 토론 주제 후 15시 10분에 폐회하였습니다.

가. 보고 사항

2021년도 정기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우리협회에서는 협회 정관 제24조 4항 제47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1년도 정기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 근거: 제24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20.02.01.>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0.02.01.>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0.02.01.>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 2020.02.01.>

제47조(회계감사 등)

- ① 협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7>
-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감사시행

- 일 시 : 2022. 1. 12
- 장 소 : 올림픽공원내 테니스경기장 2층 회장실
- 감 사 인 : 오재윤 행정감사, 김태성 공인회계사
- 감사보고 : 한중우 사무처장

가. 보고 사항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지난 2022년 1월 22일 (토) 11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웨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도 이사회에서 우리 협회 정관 제14조 2항 1호와 6호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변경 또는 신규로 수행, 실시하는 사업을 회장에게 위임하며,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관련 근거: 협회 정관 제14조 (이사의 구성 및 기능)

-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주요내용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국내대회는 예산사업 7건, 주관사업 2건, 승인사업 33건이 계획되어있으며, 국제대회는 국내개최대회 32건, 파견사업 14건, 주관사업 4건이 계획되어있고, 생활체육 사업은 예산사업 2건, 주관사업 1건, 랭킹대회 58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훈련사업은 8건, 강습회/교육사업은 12건, 예정된 회의 5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마케팅/홍보사업에서는 ‘동영상 채널 다각화를 통한 테니스 미디어 콘텐츠 강화’ 업무, ‘전문체육, 생활체육 대회 중계방송 및 하이라이트 영상 보급’ 업무, ‘테니스 유튜버 연계 다양한 테니스 콘텐츠 개발’ 등 ‘자체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 활성화 업

무’, ‘대한테니스협회 스폰서십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시·도 테니스협회와 공동 마케팅 사업 검토 및 추진 협의’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은 2019~2020년도 보조금 사업에서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도 중고연맹이 진행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해당관할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고연맹은 정관 등 제규정 위반, 비위사실을 은폐하고 방만한 운영 및 임의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배하였고, 지출 증빙 미비 및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집행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운영비를 개인 사적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중고테니스연맹에서 2022년 1월 10일 우리 협회로 제출한 2022년 사업계획서 중 개최지 미정으로 제출한 3개 대회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심의를 보류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을 받아 이사회 안건에 재상정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예산은 총 41억1천2백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10억6천1백만원, 대회비는 13억4천9백만원, 훈련비는 4억9천만원, 사업비는 8억2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등의 사무처운영비는 2억9천7백만원, 기타 전기이월금, 특별회계비 1억2천 2백만원 이며,

세출은 대회비 14억9천1백만원, 훈련비 5억8천1백만원, 사업비 11억5천9백만원, 사무처인건비 8억3천4백만원, 기타지출로는 대회상금 3천만원, 특별회계 및 차기이월금 2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중고테니스연맹 2022년도 대회 개최지 미정대회 (3개)

[별첨자료. 사업계획서4p~6p 참조]

- 2022 KMHTF 오픈 춘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 제43회 회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 2022 KMHTF 오픈 추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별첨: 1) 2022년도 사업계획서

2) 2022년도 예산서

4 임원 변경 보고의 건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회장 2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가 선임하였기에 정관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금번 총회에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 관련 근거: 협회 정관 제22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임 임원 : 부회장 - 이형택, 김인술

나. 신임 임원

직위	성명	소속
이사	최승재	목포과학대학교 운동건강학과 교수
이사	최천진	JTBC 테니스 해설위원
이사	진대성	前 테니스 국가대표 상비군
이사	전영식	前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처장
이사	김현준	순천향대학교 테니스부 감독

다. 변경 일 : 2022년 1월 22일

5**2021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 2021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사항

회의명칭	개최횟수
경기력향상위원회	8회
주니어육성위원회	5회
경기위원회	6회
공인검정위원회	6회
스포츠공정위원회	2회
심판위원회	3회
인사위원회	3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주니어소위원회	1회 (2021.01.25.)

* 별첨 : 2021년도 사업보고서 회의개최 현황 참고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2022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Qualifiers(한국 vs 오스트리아)를 2022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실내테니스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 1) 대회명칭 : 2022년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Qualifiers
(한국 vs 오스트리아)
- 2) 대회기간 : 2022. 3. 4. ~ 5. (2일간)
- 3) 대회장소 :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실내테니스장)
- 4) 주 최 : 국제테니스연맹
- 5) 주 관 : 대한테니스협회
- 6) 경기종목 : (남자)국가대항전
- 7) 경기방식 : 4단1복식 3선승제(각 경기는 3세트 매치)
- 8) 사 용 구 : 헤드 Head(Tour)

7 사무처 주요 업무 보고의 건

가. 보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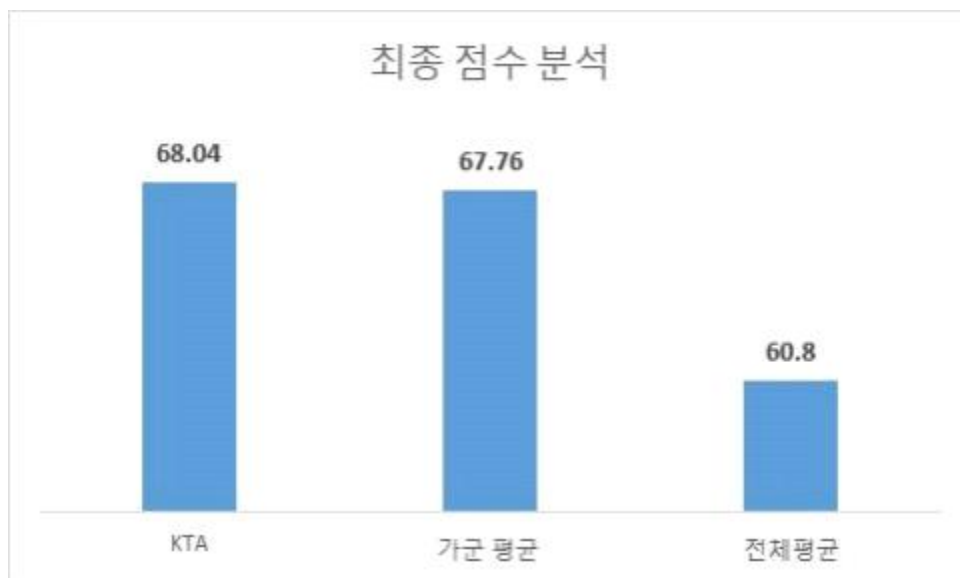
우리 협회에서는 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1) 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혁신 평가 결과

78개 회원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체육단체 혁신평가에서 대한테니스협회 평가점수는 68.04점으로 가군 평균보다는 0.28점, 전체평균보다 7.24점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등급은 B(양호)로 기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최종 점수 분석



- 대한테니스협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비전전략, 주요사업, 인권 및 윤리는 가군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운영, 단체 자율성은 낮게 나타남.

별첨 : 2021년도 대한테니스협회 혁신평가 결과 보고서

2) 사무처 직원 사직의 건

사무처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 및 이직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사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최유나 (회계팀 직원) * 사직일 2021년 5월 31일
- 노영수 (사무처장) * 사직일 2021년 7월 31일
- 이성재 (기획홍보팀 대리) * 사직일 2021년 8월 20일
- 홍다정 (국제팀 대리) * 사직일 2021년 10월 31일
- 김서희 (국제팀 직원) * 사직일 2021년 12월 15일

3) 사무처 직원 현황 보고

우리 협회 사무처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처 직원 현황을 보고합니다.

NO	직위	성명	팀명	비고
1	사무처장	한종우	사무처 총괄	신입(2021.09.01.)
2	차장	김은영	경기팀	
3	차장	오성호	기획홍보팀	
4	차장	임차훈	국제팀	신입(2021.12.13.)
5	과장	연수미	회계팀	
6	대리	김광현	경기팀	
7	대리	신지희	경기팀	
8	직원	이정빈	회계팀	
9	직원	김지원	국제팀	
10	직원	박소희	인사총무팀	신입(2021.10.01.)
11	직원	윤재영	국제팀	신입(2021.12.15.)
12	과장	임연희	인사총무팀	육아휴직 (2021.10.1.-2022.12.31.)
13	직원	김예현	기획홍보팀	육아휴직 (2021.2.1.-2022.4.29.)

8**대한테니스협회 후원 계약 체결 예정 보고의 건****가. 보고 사항**

대한테니스협회 국가대표 공식 의류 및 공식 사용구 후원 계약 체결 예정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1) 국가대표 공식 의류 후원 계약 체결 예정

- 계약대상 : 뉴발란스

2) 전문체육/생활체육 공식 사용구 후원 계약 체결 예정

구 분	전문체육	생활체육
계약대상	(주) 앨커미스트	(주) 앨커미스트
사 용 구	헤드 챔피언십, 헤드 투어	헤드 챔피언십
사용범위	KTA 주최 및 주관하는 국내예산대회, 종합경기대회, 국내개최 국제대회	KTA 주최 및 주관하는 통합 생체 테니스대회 (랭킹대회 포함)

가. 보고 사항

제27대 집행부에서 (주)에스티엔과 계약한 KTA 테니스레슨 영상콘텐츠 및 대회 중계방송 제작관련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채무 종결을 완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 미지급 총액 : 108,900,000원

KTA-(주)에스티엔 전문체육 중계방송에 대한 계약

구분	금액	비고
19상반기	36,300,000	지급
19하반기	36,300,000	미지급
20상반기	36,300,000	미지급
20하반기	36,300,000	미지급
미지급 계	108,900,000	

□ 경과

2021. 12. 31 : 정산 완료 및 채무종결 완료

- 별첨: 1. 2019년도 전문체육 중계방송 제작용역 재계약 체결의 건 (2019-234)
2. 2020년도 전문체육 중계방송 제작용역 재계약 체결의 건 (2020-319)

가. 보고 사항

제27대 집행부에서 포토클럽-임재섭과 계약한 생활체육 중계방송(인터넷) 제작 관련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채무 종결을 완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미지급 총액 : 26,400,000원

KTA-포토클럽(대표: 임재섭) 생활체육 중계방송에 대한 계약

내역	금액 (2021.2.1.기준)	금액 (2021.6.30.기준)
생활체육 중계제작비	26,400,000	지급 완료

경과

2021. 6. 30 : 정산 완료 및 채무종결 완료

11 각종 소송 보고의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아머스포츠코리아 약정금 청구소송
- 27대 소송 관련 비용
- 28대 소송 관련 비용
- 소송 외 관련 비용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사 건 명 : 2020고단3214

사건번호 : 2018년 형제15167호, 30027호, 2019년 형제 35410호,
2020년 형제 30413호

원 고 : 의정부지방검찰청

피 고 : 1. 주원홍 2. 양종수 3. 박영순 4. 대한테니스협회

◆ 진행사항

21년 12월 14일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주원홍 징역 1년, 양종수 징역 1년, 박영순 벌금 500만원, 테니스협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함.

※ 판결은 22년 2월 17일 예정

◆ 기일내용

날짜	시간	장소	진행사항	비고
2020-09-24	11:20	7호법정(제1신관 1층)	기일변경	
2020-11-24	11:00	7호법정(제1신관 1층)	속행	협회 장민수 변호사 참석
2021-03-16	14:00	7호법정(제1신관 1층)	속행	김성환, 김홍배, 김정태 증인신문
2021-05-27	15:30	7호법정(제1신관 1층)	속행	육사 관계자 서성혁, 김일두 증인신문
2021-08-24	14:00	7호법정(제1신관 1층)	기일변경	
2021-10-07	14:00	7호법정(제1신관 1층)	속행	박광수, 노영수, 김용태 증인신문
2021-12-14	14:00	7호법정(제1신관 1층)	속행	주원홍, 양종수, 박영순 피고신문
2022-01-20	10:00	7호법정(제1신관 2층)	기일변경	
2022-02-17	10:00	7호법정(제1신관 2층)	최종판결	

□ 아머스포츠코리아 약정금 청구 소송

◆ 개요

코로나19로 테니스대회 및 테니스 활동이 어려워져 후원사의 요청을 접수하였고 2020년 12월 16일에 특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머스포츠코리아가 계약 내용을 미이행.

◆ 계약 내용

21년 현금 8천만원, 물품 8천만원을 협회에 지급

◆ 진행사항

법무 대리인을 통해 현금 및 물품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 진행 준비(2021.12.15.)

□ 27대 소송 관련 비용

◆ 개요

제27대 집행부에서 육사코트 관련 소송 관련 비용으로 총 97,80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지급 비용(지출 예정금액)이 177,349,053원이 있음

◆ 세부 내역

▣ 27대 소송 관련 지급 비용

일 자	수 입	지 출	내 역
2016-11-04		636,800	불법 지점 설치에 따른 법률사무소 다민 업무진행비
2018-01-12		68,500	가압류 취소 소송 수수료
2018-08-07		114,000	미디어월 소송패소에 따른 대책회의 교통비
2018-08-10		15,276,300	미디어월 소송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
2018-08-30		33,000,000	미디어월 항소심 선납(5천만원 중 3천 선납)
2018-09-06	295,700	-	미디어월 항소심 소송비용 환급 (보정명령에 따른 환급)
2018-12-31		22,000,000	미디어월 항소심 선납
2019-12-10		5,500,000	육사 변상금 부과 행정소송착수금
2019-12-18		986,800	육사코트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가 취소소송
2020-06-02		50,000	미디어월 항소심 추가 송달료
2020-12-04		165,000	미디어월 항소심 참고서면 제출용 녹취 속기료
2021-01-20		19,980,600	미디어월 상고심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2021-02-08		25,000	상고심 소송위임장 킷서비스
2021-04-01	9,949,500	-	상고심 소송등 인지의 환급 청구
계	10,245,200	97,803,000	

▣ 27대 소송관련 미지급 비용

일 자	수 입	지 출	내 역
2021-01-20		160,849,053	육사코트 변상금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미지급)
진행 중		16,500,000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소송
계		177,349,053	

□ 28대 소송 관련 비용

◆ 개요

27대 집행부의 소송 관련 부분을 재검토하기 위한 법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음. 현재 지출 비용은 19,953,500원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될 예정임

◆ 세부 내역

▣ 28대 소송 관련 지급 비용

일 자	수 입	지 출	내 역
2021-10-07		5,500,000	27대 집행부의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한 법률 심의 (형사)
2021-10-29		5,500,000	전집행부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문료 (민사)
2021-12-10		8,250,000	아머스포츠키리아 약정금 청구건 (민사)
2021-12-16		703,500	아머스포츠키리아 약정금 청구 소송비용
계		19,953,500	

□ 소송 외 비용

◆ 개요 :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가세

육사코트 관련 소송 외 비용 지출 금액은 69,616,620원, 진행 중인 금액은 35,831,870원, 승소로 해소된 금액은 731,132,060원이 있음.

◆ 세부 내역

▣ 소송 외 비용

발생연도	지출	내역	비고
2018	6,616,620	육사테니스장 부가가치세 납부	장충 이행보증용
2017	50,000,000	구리시 이행 강제금	통장 압류 후 환수
2017	35,831,870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818m ²)	진행 중
2018	(731,132,060)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5,390m ³)	협회 승소
2021	13,000,000	사무처 1,2층 경매에 따른 집기 구매 및 이전비	주니어 후원회 구입 후 무상임대
계	105,448,490	승소 비용 제외	지출 및 예정 비용

12 한국중고테니스연맹 감사 결과 보고의 건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중고테니스연맹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은 2019~2020년도 보조금 사업에서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부적정집행에 대한 환수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도 중고연맹이 진행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해당관할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행정감사 결과

1. 정관 등 제규정의 위반
2. 비위사실 은폐
3. 방만한 운영
4. 임의 운영

◆ 조치사항 목록

연번	항목	세목	조치요구
1	정관등 제규정위반	대의원 정족수 및 자격 미달	경고, 시정
2		사무국장 임의 채용 및 업무	경고, 징계
3	비위사실 은폐	회계감사 미선임	경고
4		형식적 행정감사	경고
5	방만한 운영	기록 분실 및 자료 미비	시정, 징계, 경고, 개선
6		대회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불감증	경고
7		정관 미 개정	시정
8	임의 운영	유명 무실 이사회	경고
9		위원회 규정 미비 및 위원 선정 부적정	시정
10		공시 공지등 정보 투명성 미흡	개선

□ 회계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배함.

1. 양구군 보조금 관련 처분내역

- 양구군청 회수액 162,157,429원
- 감사 시 적발금액 163,403,310원

2. 양구군 보조금 중 불인정금액 불포함 되었지만, 증빙 미비-참가선수 기념품비

발생 연도	지 출
2018	34,100,000원
2019	24,100,000원
2020	20,000,000원
계	78,200,000원

3. 김천시청 보조금 관련 적발금액

발생 연도	지 출
2019	1,513,500원
2020	1,796,000원
계	3,309,500원

4. 운영비 관련 문제점 - 사적사용 경비

구 분	2018		2019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양구 외 지역 사용비	248	13,950,740	360	15,972,653	262	9,986,190
개인차량수리비	5	1,415,170	3	385,000	5	1,253,360
비품구입비	4	2,560,000	2	152,000	4	304,000
상품권구입비	2	3,780,000	3	4,050,000	5	5,100,000
계	259	21,705,910	368	20,559,653	276	16,643,550
3년 합계						58,909,113

5. 기타 : 사무국장 소득세원천징수 및 대납액 3년간 2,019,600원

과태료 대납액 3년간 226,000원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여자테니스연맹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 행정감사 결과

행정감사 실시를 위해 한국여자테니스연맹에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구성요건 상 행정업무 수행할 역량이 미흡하여 행정감사가 실시되지 못함.

□ 회계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5년간)

◆ 권고 사항

1. 세입세출결산과 결산일 기준 통장 잔액 차이 발생 및 결산상 누락 정기예금 발생 건에 대하여 차기 이후 결산 시 수정 권고
2. 퇴직금 등 내부규정 구비 및 상시 증빙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당부

14 공인검정사업 결과 보고의 건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테니스협회 경기 용품 및 시설공인규정 제19조에 따라 2021년도 공인검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내용

① 제품인증 : 2021년 제품인증 총 18종

연번	제품명	업체명	인증기간
1	SCOTEC T&P	티엔피산업	2021.2.19~2023.02.18
2	Laykold Masters Gel System	에이치그라운드	2021.04.01~2023.03.31
3	플렉시쿠션(Plexi Cushion)	(주)베노	2021.06.15.~2023.06.14.
4	리바운드에이스코팅 (Rebound Ace Coating)	(주)베노	2021.06.15.~2023.06.14.
5	리바운드에이스쿠션 (Rebound Ace Cushion)	(주)베노	2021.06.15.~2023.06.14.
6	Eco-Masters	원팀코리아	2021.08.12.~2023.08.11.
7	Ground Sky	한서포리머	2021.09.12.~2023.09.11
8	Hamonice	한서포리머	2021.09.12.~2023.09.11
9	플렉시쿠션 (PLEXICUSHION PRESTIGE)	(주)양투카에스엘	2021.08.12.~2023.08.11.
10	Rebound Ace GS	(주)양투카에스엘	2021.09.12~2023.09.11
11	Rebound Ace Pro	(주)양투카에스엘	2021.09.12~2023.09.11
12	Ground Sky Ra	아트캠	2021.10.27~2023.10.26
13	Ground Sky Ua	아트캠	2021.10.27~2023.10.26
14	Ground Sky Flex	아트캠	2021.10.27~2023.10.26
15	Deco Turf	천기산업개발(주)	2021.11.20.~2023.11.19
16	KBSE20	케이앤비준우(주)	2021.11.24.~2023.11.23.
17	KBEE20	케이앤비준우(주)	2021.11.24.~2023.11.23.
18	Courtsol Comfort	(주)신한엔터프라이즈	2021.11.24.~2023.11.23.

② 구장공인 : 2021년 구장공인 총 12개 구장

연번	시군구	코트명	공인내용	인증기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스포원테니스코트	하드 10면 표층:Rebound Ace GS [A-2]	2021.4.1.~2027.3.31.
2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테니스장	하드6면 (실내9~12면,실외7~8면코트) 표층:Deco-Turf[A-1]	2021.6.15.~2027.6.14.
3	강원도 영월군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실내하드3면 표층:Rebound AceGS [A-2]	2021.6.15.~2027.6.14.
4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 실내테니스장	실내하드4면 표층:Deco-Turf [A-1]	2021.6.15.~2027.6.14.
5	강원도 양구군	양구초롱이테니스장	하드12면 표층 :Sports Master Pro [A-1]	2021.6.15.~2027.6.14.
6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열우물테니스경기장	하드코트6면 (센터코트1면,쇼트코트1면,실외 5~8면) 하드코트14면 (실내1~4면,실외1~4면,9~14면) 표층:ReboundAcePro[A-1]	2020.6.9.~2026.6.8. 2021.6.15.~2027.6.14.
7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테니스장	조명 실외 11면(3년 재인증)	2021.10.10.~2024.10.9.
8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하드코트15면 (센터1면,실내4면,실외10면) 표층:Deco-Turf[A-1] 조명:모스코우	2021.08.12~2027.08.11.
9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테니스장	하드코트7면(9면~15면코트) 표층:ReboundAceGS[A-2] 조명:한국엘이디KOL-FPTS-800	2021.10.21.~2027.10.20.
1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공설테니스장	하드코트5면 표층:SCOTECT&P[A-1]	2021.10.21.~2027.10.20.
11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 국제테니스장	하드코트6면(9~14면코트) 표층:Rebound Ace GS [A-2]	2021.11.9.~2027.11.8.
12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립테니스장	하드코트10면 표층:ReboundAcePro[A-1] 조명:LN공사	2021.7.27.~2027.7.26.

③ 조명/용품/볼 : 2021년 구장공인 총 21종

순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인증기간
1	볼	짜르투어	(주)낫소	2021.1.1.~2021.12.31
2	볼	스타매치포인트	신신상사(주)	2021.1.1.~2021.12.31
3	볼	Dunlop Australian Open	(주)삼화기연	2021.1.1.~2021.12.31
4	볼	Dunlop ATP Championship	(주)삼화기연	2021.1.1.~2021.12.31
5	볼	Babolat Championship	유진커머스	2021.1.1.~2021.12.31
6	볼	Wilson Championship	(주)아머스포츠키리아	2021.1.1.~2021.12.31
7	볼	Wilson US Open	(주)아머스포츠키리아	2021.1.1.~2021.12.31
8	볼	Wilson Trinita	(주)아머스포츠키리아	2021.1.1.~2021.12.31
9	볼	Head Championship	(주)엘커미스트	2021.1.1.~2021.12.31
10	볼	Head TOUR	(주)엘커미스트	2021.1.1.~2021.12.31
11	볼	X-ONE	(주)티에프케이	2021.1.1.~2021.12.31
12	조명	MultiPlay 600	로지	2021.10.1.~2023.9.30
13	조명	MultiCorss 600	로지	2021.10.1.~2023.9.30
14	경기용품	방풍망(에드워드방풍망)	한신스포츠산업	2021.07.29~2023.07.28.
15	경기용품	네트포스트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16	경기용품	심판대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17	경기용품	스코어보드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18	경기용품	네트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19	경기용품	비구방지펜스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20	경기용품	싱글스틱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21	경기용품	방풍망	대성체육산업	2021.09.13~2023.9.12

나. 심 의 안 건

1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에는 정관 제7조 9항 4호에 의거하여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대하여 심의·의결받고자 함.

※ 관련 근거: 협회 정관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⑨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8.01.27, 2020.02.01>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내 용

우리 협회에는 2021년 사업결과와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주요내용

2021년 사업보고에 대하여는

국내대회는 예산사업 5건을 진행하였고, 주관사업 중 소년체육대회는 대통령기 겸임대회로 진행, 전국체육대회는 19세 이하부만 개최되었으며, 승인사업 35건 중 26건 진행, 9건 미개최 되었습니다.

국제대회는 국내개최 사업 38건 중 16건 진행, 22건이 미개최 되었고, 파견사업 12건 중 4건 진행, 8건이 미개최, 주관사업 2건 중 1건 진행, 1건이 미개최, 국내 선수가 참가한 국제대회는 267건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사업은 예산사업 2건과 주관사업 1건이 미개최 되었고, 랭킹대회는 63건이 계획되었으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랭킹대회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니어대회 15건 모두 운영중단 되었습니다.

훈련사업은 8건 중, 6건은 2021년도 실시, 2건은 2022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습회/교육사업은 12건 중 6건 진행되었으며 5건 미개최 및 1건은 2022년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회의/공인검정 사업 중 회의 보고로 총회가 1회, 이사회가 4회, 국제회의 2회, 각종 분과위원회 34건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도에 진행된 공인검정은 구장공인 12건, 볼 체 품인증 11건, 바닥재 18건, 조명 2건, 경기용품 8건이 있었습니다.

마케팅/홍보사업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계방송 송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대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협회가 운영 중인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4,080명, 네이버TV 채널 구독자 수는 2,056명이고, 홍보기사는 총 424건을 생성, 배포했습니다.

2021년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금액 총31억3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8억9천4백만원, 대회비 8억7천4백만원, 훈련비 3억5천9백만원, 사업비 6억8천3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사무처운영비 2억7천7백만원, 기타 전기이월금, 이자수입 4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대회비 9억2천3백만원, 훈련비 3억6천5백만원, 사업비 8억원, 사무처운영비 7억7천2백만원, 기타지출 상금등 1억6천6백만원, 차기이월금으로 1억5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에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의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 바랍니다.

별첨 : 1) 2021년도 사업보고서
2) 2021년도 결산서

라. 의결사항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가. 의결주문

정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에는 정관 제52조 및 제53조1항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에 대해 심의, 의결 받고자 함.

※ 관련 근거: 협회 정관 제52조 (정관 변경)

- ① 협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1.27, 2020.02.01.>
- ②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다. 내 용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 제53조 1항 의거 개정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협회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종목단체 규율사항 최소, 필수사항 위주로 축소하여, 회원종목단체 자율성 부여 및 권한이양을 통한 **체육단체 운영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임원의 증원, 임원의 선수활동 등의 체육회 승인 사항 삭제
 - 체육회 임원 인준 대상 수정: 회장, 부회장 → 회장
 - 종목별 공인 관련 제·개정 시 체육회 승인 사항에서 보고 사항으로 변경
- **규정 정비에 따른 용어수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규정 정비
- **체육회 규정 일원화하여** 공통사항 유사하게 자구 수정
 - 정관, 시·도체육회규정 등 공통된 사항에 대해 유사하게 자구 수정
 - 도평방지와 관련된 규정 준수 사항
 - 총회의 원격회의 개최 가능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서 동일 대학 출신 20%이내 삭제 등

< 주요 사항 신규대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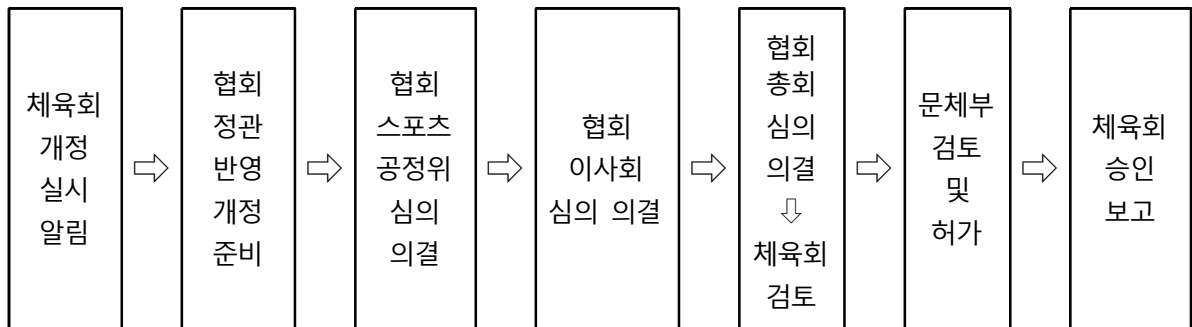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5조의2(전국규모연맹체) ① “생략” ② 회원종목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횡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의2(전국규모연맹체) ① “ 현행과 같음 ” ② 회원종목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횡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 현행과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수정 (법령정비기준) ■ 단체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회 제출 의무 삭제 - 제3항과 합침 ■ 제2항으로 이동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무)</p> <p>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의 권리와 제10조제2항의 의무를 갖는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무)</p> <p>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관련조항 수정</p> <p>-정관 제10조의 제1~4항까지 근거 조항</p> <p>■ 체육회규정일원화</p> <p>-정관과 동일하게 도핑방지규정 명시</p>
<p>제 8 조(총회의 소집) “생략”</p> <p>② “생략”</p> <p>1~2. “생략”</p> <p>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p> <p>③ 총회 소집권자의 결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p>	<p>제 8 조(총회의 소집)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인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4.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p> <p>③ 총회 소집권자의 결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p>	<p>■ 자구수정(법령정비기준)</p> <p>■ 호 변경</p> <p>■ 용어정비(자구삭제)</p> <p>■ 자구수정(법령정비기준)</p> <p>■ 체육회규정일원화</p> <p>-정관과 동일하게 수정</p> <p>-원격수단을 통한 총회 개최 가능</p>
<p>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4. “생략”</p> <p>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p>	<p>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p>	<p>■ 자구수정(법령정비기준)</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p> <p>③ “생략”</p> <p>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p>	<p>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회 승인 내용 삭제 ■ 상동
<p>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생략”</p> <p>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p> <p>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p> <p>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p> <p>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p>	<p>제22조(임원의 선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p> <p>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p> <p>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p> <p>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에 맞게 제목 수정 ■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 인준은 회장만 하도록 개정하므로 부회장이하 임원 해당조항 삭제 ■ 체육회 규정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과 동일 적용 - 종목별 특성(해당종목 양성 대학 비중)을 고려한 개정 ■ 자구수정(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위원회 추천 사항 삭제(회원단체 요구사항) ■ 분야별 20%로 통일

현행	개정	개정사유
<p>한다.</p> <p>④~⑤ “생략”</p> <p>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 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⑦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⑧~⑨ “생략”</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 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⑦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⑧~⑨ “현행과 같음”</p>	<p>■ 체육회 규정 일원화 -정관 및 시도체육회 규정과 동일하게 자구수정</p> <p>■ 체육회 규정 일원화 -인준대상 회장으로 한정 (시도체육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p>

□ 정관 승인 절차



※ 대한체육회 및 문체부 허가과정에서 개정, 제정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건부 의사결정이 필요함.

라. 의결사항

정관 개정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및 문체부 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정, 제정사항에 대해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제28대 임원 임용규, 한나래 이사 승인의 건

가. 의결주문

제28대 임원 임용규, 한나래 이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협회 정관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제28대 임원 임용규, 한나래 이사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받고자 함.

※ 관련 근거: 협회 정관 제18조 (임원)

-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다. 내 용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정관 제18조 2항에 의거 임용규, 한나래 이사를 제28대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라. 의결사항

현역 테니스 선수 임용규, 한나래 이사를 제28대 임원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4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가. 의결주문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협회 정관 제7조 9항 및 제8조 5항에 의거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받고자 함.

※ 관련 근거: **협회 정관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⑨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8.01.27., 2020.02.01.>

협회 정관 제8조 (총회의 소집)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1.27.>

다. 내 용

미디어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라. 의결사항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

다. 기타 사항